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마마치킨]

정 보 공 개 서

[한국파파존스(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한국파파존스 (주)]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 필요 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10(신사동 용기빌딩4층)

[대표전화번호] 02-518-8080

[대표팩스번호] 02-515-8448

담당부서 : 02-518-8080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한국파파존스(주)	마마치킨 외1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210(신사동, 용기빌딩 4층)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2.12.18.	2002.12.18.	서창우	02-518-8080	02-515-8448
	법인등록번호	110111-2675499	사업자등록번호	211 - 87 - 2562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험한 경험은 없으며,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서창우	마마치킨 외1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10 (신사동,용기빌딩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서창우	02-518-8080	02-515-8448
사용인 (임원)	전중구	마마치킨 외1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10 (신사동,용기빌딩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서창우	02-518-8080	02-515-844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강신우	마마치킨 외1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10 (신사동,용기빌딩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서창우	02-518-8080	02-515-844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사내이사)	김호진	마마치킨 외1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10 (신사동,용기빌딩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서창우	02-518-8080	02-515-844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사내이사)	김관식	마마치킨 외1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10 (신사동,용기빌딩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서창우	02-518-8080	02-515-844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사내이사)	정태호	마마치킨 외1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10 (신사동,용기빌딩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서창우	02-518-8080	02-515-844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전용관	마마치킨 외1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10 (신사동,용기빌딩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서창우	02-518-8080	02-515-844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김용훈	마마치킨 외1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10 (신사동,용기빌딩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서창우	02-518-8080	02-515-844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김안후	마마치킨 외1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10 (신사동,용기빌딩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서창우	02-518-8080	02-515-844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감사)	배성수	마마치킨 외1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10 (신사동,용기빌딩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서창우	02-518-8080	02-515-8448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 (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마마치킨]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마마치킨(MAMA CHICKEN)	
상 호	마마치킨 OO점	가맹점 영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개설시 상호명 기재
상표(서비스표)	마마치킨	출원 및 등록번호에 관한사항은 9.사용을 허가하는 지식 재산권에 기술함.
상표(서비스표)	MAMA CHICKEN	출원 및 등록번호에 관한사항은 9.사용을 허가하는 지식 재산권에 기술함.
상표(서비스표)		출원 및 등록번호에 관한사항은 9.사용을 허가하는 지식 재산권에 기술함.
그 밖의 영업표지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21,841,038	12,791,726	9,049,312	61,794,291	6,312,444	4,534,800
2022년	26,299,888	13,927,328	12,372,560	66,465,936	4,799,267	3,923,247
2023년	25,952,439	12,393,544	13,558,895	68,066,768	4,174,401	3,078,005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별첨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5. - 1)의 매출액과 같음.

※ [당사에서 결정한 매출액은 재경팀에서 자료에 근거한 매출액이며, 마마치킨은 가맹사업 예정이어서 별도로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마마치킨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서창우	대표이사	2002.12 ~ 현재	한국파파존스(주) 대표이사	대외업무 총괄
	전중구	사장	2003.02 ~ 현재	한국파파존스(주) 사장	사업총괄
	김관식	사내이사	2014.09 ~ 현재	한국파파존스(주) 사내이사	재무자문
	김호진	사내이사	2017.02 ~ 현재	한국파파존스(주) 사내이사	영업자문
	정태호	사내이사	2017.02 ~ 현재	한국파파존스(주) 사내이사	운영자문
	강신우	사내이사	2023.03 ~ 현재	한국파파존스(주) 사내이사	투자자문
	전용관	상무	2005.01 ~ 현재	한국파파존스(주) 상무	재무회계
	김용훈	이사	2014.09 ~ 현재	한국파파존스(주) 이사	사업개발
	김안후	이사	2015.06 ~ 현재	한국파파존스(주) 이사	구매본부
	배성수	감사	2017.02 ~ 현재	한국파파존스(주) 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6	4	157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한국파파존스(주)	가맹사업 경영	2004.12.15.~현재	파파존스피자(등록번호: 2008010075) 영업표지로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관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마마치킨	가맹사업	출원일자 : 2019.08.21 등록일자 : 2020.08.11	출원번호 : 4020190129685 등록번호 : 4016329250000	한국파파존스(주)	2030.08.11
MAMA CHICKEN		출원일자 : 2022.10.21. 등록일자 : 2024.04.04	출원번호 : 4020220192238 등록번호 : 4021785930000		2034.04.04
		출원일자 : 2022.10.21 등록일자 : 2024.04.04	출원번호 : 4020220192240 등록번호 : 4021785920000		2034.04.04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마마치킨] 가맹사업 현황

1. [마마치킨]을 시작한 날: 해당없음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3년 7월 1일)

2. [마마치킨]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한국파파존스(주)	마마치킨	서창우	가맹사업 예정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10 (신사동,윙기빌딩4층)

3. 당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마마치킨	대분류	소분류
	치킨	치킨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마마치킨]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1
서울							1		1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최근 3년간 [마마치킨]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022						
2023						

6. [마마치킨]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수		
					2021년말	2022년말	2023년말
가맹본부	한국파파존스(주)	파파존스파자	2008010075	치킨	200/17	226/13	239/14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 제외)과 그 산정기준

마마치킨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출수
		연간 평균 매출액	평당 평균	상한	평당 상한	하한	평당 하한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해당사항 없음

8. [마마치킨]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마마치킨]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해당사항 없음(가맹사업 예정이어서 가맹사업관련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 해당사항 없음(향후 가맹점 모집 시에 결정할 것이며, 결정된 현황은 업로드 예정입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강남제일대리점 담당자 : 김영혜 연락처 : 02-562-0154 팩스 : 02-562-2377
보험계약자	한국파파존스(주)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마마치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물품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상황에 따라 물품대금 보증보험 대체가능)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2,200]천원				
가맹금	1,100	계약 시 예치	계약기간일할반환		
교육비	1,100	계약 시 예치	반환 안됨	가맹점 교육비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천원]			미수채권 없으면 반환
물품보증금	3,000	계약 시 예치	식자재 물품보증금	현금

-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물품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경우 반환되지 않습니다.(수수료는 요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5,200]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는 부가세 별도임)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5,200
최초가맹비 (교육비포함)	2,200
물품보증금	3,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장(66제곱미터기준)
-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평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85,705]				
인테리어	해당업체	66,000	3,300	선금 30%:착공 전 중도금 40%:공사 1/2완료 시점 잔금 30%: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	공사 전 계약 취소	66㎡기준 3.3㎡ 늘어날 때마다 3,300원추가부담 산재 및 고용보험료 별도
튀김기	해당업체	41,800	-	계약 시 50% 입고 완료후 30일 이내 50%	공사 발주 전 계약취소	
전산시스템	가맹본부	7,524	-	입고 완료 후 30일 이내	발주 전 계약취소	소프트웨어(Profit-k)비용 2,640천원 포함
디지털 사이니지	해당업체	1,763	-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	발주 전 계약취소	기본3대 기준 지역에 따라 설치비 별도
주방장비 외	해당업체	29,700	-	계약 시 50% 입고 완료후 30일 이내 50%	공사 발주 전 계약취소	점포조건에 따라 금액의 증감
냉난방시설	해당업체	8,580	-	계약 시 50%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50%	공사 발주 전 계약취소	상동
덕트공사	해당업체	5,720	-	계약 시 50%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50%	공사 발주 전 계약취소	상동
간판	해당업체	9,570	-	계약 시 50%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50%	공사 발주 전 계약취소	상동
오토바이	해당업체	2,728	-	입고 완료 후 30일 이내	발주 전 계약취소	최초 1대 수량에 따라 금액증감 지역에 따라 운송비별도
도시가스	해당업체	3,520	-	계약 시 50%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50%	공사 발주 전 계약취소	점포조건에 따라 금액의 증감
감리비	가맹본부	3,300	-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	공사 전 계약취소 (도면 등 소요비용제외)	
초기광고비	협력업체	5,500	-	영업개시일 전후	발주 전 계약취소	고객 홍보용 선물, 전단지 등의 비용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맹점(66제곱미터) 매장기준에 산출된 비용임으로 평수 증감 및 별도공사(철거공사, 전기증설, 외부금속/유리공사, 어닝공사, 소방공사, 매장 내 화장실공사, 핫파우치시스템, 전기오토바이 등) 공사범위가 추가됨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환율차로 인해 수입 장비 가격과 수입 원자재로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지방경비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업무제휴에 따라 공사 및 납품업체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매뉴얼 및 설계비 등의 비용과 감리비로 3.3㎡ 당 [220]천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를 진행할 경우 해당 업체는 공사 지명원을 가맹본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위 표의 3.3㎡당 금액의 산정은 기준 면적을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나눈 금액에 불과하며, 이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는 다르며, 품목에 따라 면적과는 성질상 비례하지 않아서 실제 면적과는 비용이 같거나 적은 등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사업개발팀 (전화:070-7114-9221~2)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가맹희망자와 개발팀담당자가 마마치킨 입지에 맞는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 임원의 승인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최적의 입지를 찾고,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만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매장운영에 있어 인원관리 및 모집/교육/ 고객서비스/매출 및 이익관리/ 청결 및 매장재고관리/기밀유지 및 비 경쟁조항 준수/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정규 교육이수/ 사업자 및 점장 변경 시 가맹본부에서 승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인터뷰가 통과되고 미국에 최종승인이 있을 것, 가맹사업에 대한 투자비가 있을것, 가맹사업에 관한 교육을 성실히 받을것,
종업원	상동	만18세 이상일 것, 단, 미성년자 부모 동의 원동기 면허 소지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마마치킨]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위의 공급업체는 당사가 귀하에게 권유하는 공급업체로서 귀하의 선택에 따라 공급업체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귀하가 공급업체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사에 공급업체에 대한 사전 승인 및 매장의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시설 및 장치장식 등의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당사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공사를 다시 시행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의 업무 제휴에 따라 지정업체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가맹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매출액에 따라 상이함				
식자재비용	한국파파존스(주)	식자재주문량에 따라	익월 20일	반환불가	본사납입	매출액 및 점포의 형태에 따라 상이함
로열티	한국파파존스(주)	월매출액의 1.1%	익월 20일	상동	본사납입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광고/판촉비	한국파파존스(주)	자세한 내용은 V-9-1) 참조			광고/판촉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상품권	한국파파존스(주)	판매금액의 22%	익월 20일	상동	본사납입	
모바일상품권	각 제휴업체	할인금액 100%	매출발생시	상동	각 제휴업체 납입	각 제휴 업체별 할인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전산 시스템 개선비	한국파파존스(주)	35	익월 20일	상동	본사납입	한화(원)
물류비	한국파파존스(주)	월 식자재 발주 금액 10%	익월 20일	상동	제3자공급	제3자 공급 (3PL금액)
지역이자	한국파파존스(주)	년 18%	익월 20일	상동	본사납입	
교육훈련비	한국파파존스(주)	실비지급	익월 20일	상동	본사납입	필요 시 지급
콜센타 / 온라인 수수료	한국파파존스(주)	주문에 비례하여 발생	익월 20일	상동	업체 콜센타 운영비	
매장 환경 개선 공사비	해당업체	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공사 시 협의 후 비용 산출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상동	공사 소요 비용	로마자 VII-1 참조

- 식자재는 매출액, 판매제품, 교육정도, 폐기제품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상품권은 치킨 메뉴별로 교환할 수 있도록 사용되고 있으며 판매금액의 22%를 가맹점이 부담합니다.
- 모바일상품권은 각 제휴업체(배달의민족, 요기요, 카카오톡 등)의 할인금액에 대해 가맹점에서 100%부담하며, 제휴업체 및 할인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제휴업체별로 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가맹점에 입금 되는 기간은 2일~3일정도 소요됩니다.
- 한국파파존스(주)는 매장환경개선 공사의 기준은 10년이며 주변 환경 및 시장 환경 변화, 브랜드 전체 이미지 혁신, 기타 필요한 경우에 따라 매장환경개선의 범위와 일정을 협의하여 매장의 내/외부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매장 환경개선 공사 진행의 범위와 일정은 해당 점포의 노후도 및 구조, 환경에 따라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 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3)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가맹비의 [1,100]천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				
가맹비	1,100	계약연장(갱신) 후 3일 이내	반환되지 않음	재계약 비용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의 변경, 효력상실 등으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는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마마치킨]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인은 [(한국파파존스(주))에 양도승인에 관련된 제반비용인 행정관리비 금액 [1,100, vat포함]천원을 지급하고, 교육비 금액 [1,100, vat포함]천원과 계약이행보증금 [3,000, vat없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제42조 (계약종료 후 조치)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매뉴얼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제기간에 대하여 지체 1일 (日)당 금일십만원(₩1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위 제1항의 조치가 완료됨을 확인하는 즉시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 손해배상금 등 담보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 제1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되,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④ 가맹계약이 종료 후에 제1항의 조치가 7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가맹본부가 이를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이 계약의 규정이나 목적상 이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후에도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조항은 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갖는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마마치킨]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업운영을 위해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와 환율차로 인한 단가의 변경과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 및 업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해당사항 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2023년에는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2023년에는 수취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2023년에는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치킨명) (2024.09월 기준)	제한조건 및 내용	위반 시 책임	비고
---------------------------	-----------	---------	----

케이준 우라이드 치킨 (마일드 / 스파이스 중 택 1)			
원봉 10 pcs ₩12.9	다리 10 pcs ₩19.9	반마리 5 pcs ₩13.9	순살 650g ₩21.9
원봉 20 pcs ₩19.9		한마리 10 pcs ₩20.9	
소스치킨 (13가지 베이스소스 중 택 1)			
원봉 10 pcs ₩13.9	다리 10 pcs ₩20.9	반마리 5 pcs ₩14.9	
원봉 20 pcs ₩20.9		한마리 10 pcs ₩21.9	
베이스소스 : 내 취향 대로 기본 소스인 "베이스소스"를 선택하여 주문 하세요.			
저크소스 ₩3.0 후추와 향신료로 맛을 낸 자메이카 소스 아메리칸킹소스 ₩3.0 스윗칠리에 알맞은 중구후추를 더한 미국의 양념소스 허니비비큐소스 ₩3.0 새콤한 비비큐소스에 달콤한 꿀을 넣은 새콤달콤한 소스 파마산칼릭소스 ₩3.0 진한 파마산치즈에 마늘을 가득 넣어 볶아 넣치는 소스 버팔로소스 ₩3.0 맛소스와 식초가 어우러져 매콤시큼한 미국 전통 소스 치올레 ₩3.0 매운 파프리카에 마늘, 양파로 맛을 끌어올린 멕시코 소스 마야양념 ₩3.0 달콤한 한국 전통 양념 소스 매운양념 ₩3.0 양념 소스에 매콤한 고춧가루로 매운 맛을 낸 소스 마늘간장 ₩3.0 달콤달콤한 간장소스에 마늘로 맛을 입힌 소스 레몬페퍼 ₩3.0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후추와 레몬 맛의 분말소스 데저트허트 ₩3.0 모래 사막의 열기로 바삭함을 맛으로 나타낸 분말소스 비네가솔트 ₩3.0 식초에 소금 시큼새콤한 맛의 분말 소스 스모키비비큐 ₩3.0 스모키한 향과 그릴비프의 향이 있는 달콤한 분말 소스			
디핑소스 : 치킨과 같이 만나면 맛이 "2배" *별도주문 ₩1,000원			
망고하바네로소스 ₩3.0 매운 하바네로 소스에 달콤한 망고 맛이 강한 디핑소스 화이트디핑소스 ₩3.0 마요네즈의 느낌을 입힌 달콤한 디핑소스 체다치즈시즈닝 ₩3.0 체다 치즈맛 분말 디핑소스 핫시즈닝 ₩3.0 매운 분말 디핑소스 스윙앤사워소스 ₩3.0 쓰러라차 칠리 소스와 사과식초, 레몬으로 맛을 낸 디핑소스 허니머스타드소스 ₩3.0 머스타드 소스에 달걀과 꿀로 맛을 더한 디핑소스			
사이드메뉴			
케이준감자튀김 6.0	노가리 8.0	무뼈닭발 15.0	
해쉬브라운 2.5	떡볶이 (국물·로제·마라) 8.5	크림콘치즈 (원하는 메뉴에 토핑 UP) 4.0	
포테이토 칩 6.0	모듬감자튀김 11.0	코울슬로 2.0	
도깨비치즈볼 (5개) 5.5	불꽃오징어 (+케이준) 12.0	야채스틱 2.0	
까망베르 치즈볼 (5개) 6.0	통새우튀김 (5개) 10.0		
음료&주류			
카스 (생) 500ml 4.0	참이슬 / 5.0	조니워커 하이볼 8.0	콜라 500ml 2.5
버드 (생) 500ml 5.0	진로이즈백 5.0	김밥 하이볼 7.5	제로콜라 500ml 2.5
카스 / 테라 / 젤리 (병) 5.0	처음처럼 / 새로 5.0		스프라이트 500ml 2.5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단, 가맹본부에서
새롭게 개발하여
추가되는 신제품의
경우 판매가능)

- 1회 위반 :
시정요구,
서면경고
- 2회 위반 :
서면 재시정요구
및
상품공급중단
- 3회 위반 :
가맹계약 해지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변경(신제품 출시 및 시한제품 판매 중단), 가격 변경(인상 또는 인하)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	상품 / 용역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주류	관련법규에 따라 판매금지	1차위반 : 시정요구,서면경고 2차위반 : 서면재시정요구 및 상품공급중단 3차위반 : 가맹계약 해지	

- 한국파파존스(주)는 위표에 기재된 상품이외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상품·용역의 판매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절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우선 확인하고,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으며, 고지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단위: 원)	가격통보 방법	비고
위 3-1)참조		홈페이지, 홍보용 인쇄물, 메뉴판, 콜센터	

[상표 표상에 기재된 이외의 상품 및 용역에 관하여는 메뉴로 제공되며, 경영환경에 따라 상품 및 용역이 추가 및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치킨을 배달형태 또는 레스토랑 형태의 점포에서 판매하거나, 배달하여판매, 포장판매 형식으로 치킨을 판매하는 업종	마마치킨	X

[당사의 영업지역은 마마치킨의 브랜드에 한하여 인정되며 추후 당사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원배달구역내에는 추가로 입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상승을 위하여 최초계약서에 표시된 보장구역 외에 설정된 추가배달구역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배달구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사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출점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지역 설정기준

설정 기준	설정방법
1만 세대 당 1점포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특수상권(대형 쇼핑몰(가든파이프, 타임스퀘어,스타필드 등), 백화점(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공항, 놀이공원(에버랜드, 롯데월드 등), 대형병원, 공항 등 그 시설 자체만으로 영업지역(독립상권)을 형성하는 경우)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하지 않는 별도의 영업지역함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 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사업개발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다만, 최초 보장구역외 추가로 확장된 구역에 한하여서는 가맹계약 갱신 시 가맹점사업자 협의 없이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마마치킨’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사항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100%	-	-

[2023년말 기준 마마치킨 영업표지로 직영점 1개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2023년말 마마치킨 영업표지로 직영점 1개점 외에 가맹점을 운영하지 않아 이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의 기간

[마마치킨]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3]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제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가 본 가맹계약서 제24조(물품 공급의 중단) 각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비, 개점 전 교육비, 홍보물비, 물품대금 등 가맹본부와 약정한 각종 가맹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가맹본부”이 제20조 교육·훈련에 정한 교육에 불참하거나 수료하지 않거나, 제22조 가맹점의 점검 및 시정요구에 대하여 점검 및 시정요구를 거부나 불응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가맹점사업자”이 QSC(Quality, Service, Cleanliness)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나.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물품 등을 자점매입 또는 다른 가맹점으로부터 위장 매입 등 정상적인 구입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제21(경영지도)에 따른 경영상 정당한 규제나 지도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한 경우 9.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본부를 양도하는 경우 10.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공급 및 경영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11. “가맹점사업자”이 고객불만(품질, 서비스, 위생 등 기타 점포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고객불만(품질, 서비스, 위생, 고객응대 등 기타 점포운영 등에 관한 클레임 등) 발생에 대하여 “가맹본부”으로부터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이 상품권, 교환권 사용고객, “가맹본부”과의 제휴업체에 대한 고객서비스에 있어서 차등 대우를 하거나, 상품권, 교환권 수령거부로 인하여 고객불만이 발생한 경우 다. 기타 고객불만으로 인한 마마치킨 브랜드 이미지 등을 저하시킨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12. 가맹본부 이 지정한 가맹점 상호, 명칭 등 영업표지가 아닌 다른 가맹점의 상호, 명칭 등과 오인, 혼동하게 할 수 있는 상호·명칭 등 영업표지를 사용고지(광고, 전화, 모바일 앱 등 포함)하거나, 이로 인하여 “가맹본부” 또는 인근 가맹점 등 영업에 지장을 초래 한 경우 13. 기타 식품위생법, 개인정보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본 계약상 의무 및 사전 합의사항, 기타 “가맹본부”이 사전에 POS, 메일, 카톡, 문자, 담당직원 등을 통해 공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4.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이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41조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위 표에 기재된 계약 해지 사유 중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제41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즉시해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② 가맹본부는 본 건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이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본 건 점포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 처분, (나) 위법 사실을 처분 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 처분, 또는 (다) 위법 사실을 처분 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본조 제1항 소정의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할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본 건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칠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41조 제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사는 합의에 의해 계약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매뉴얼은 마스터프랜차이즈계약의 변경사항에 따라 사전통지 후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운영권을 환매하지 않으며, 다만 필요 시 매장의 자산은 협의 가능합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조건 및 절차는 아래와 같음(가맹계약서 제 39조)	가맹점사업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가맹사업팀 / 사업개발팀 검토(양수인 인터뷰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60일 이내에 제안된 양도 행사)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양수인 가맹점 운영교육 이수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사업개발팀 / 가맹점 사업팀 (02-518-8080)

◆ 매장 양도 양수의 관한 मामाचिकिन의 조건 및 절차

제38조 (영업양도 및 담보제공)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본건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본건 점포의 영업을 양도, 위탁운영 (이하 “영업양도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가) 가맹점사업자는 본항에 따라 영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 희망자와 합의한 가격에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맹본부에게 부여하며, (나) 해당 양수희망자는 본 계약 상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면을 가맹본부와 직접 체결 및 교환하여야 하고, 양도인은 당해 양도과정에서 가맹본부에게 발생하는 행정관리비 일금일백만(W1,000,000-부가세별도)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양도일(또는 영업입대일, 담보제공일, 이하 같다)(60)일 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등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가맹본부는 전항의 승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이 기간 중에 이유를 적시하여 거절하지 않으면 영업양도 등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④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양도의 승인을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양도 승인조건으로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지 아니하나 본 계약에 정한 점포환경개선 요구조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승인결정시까지 계약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고 연체된 채무액이 있는 경우 모두 지급하는 등, 양수인이 해당 가맹점을 가맹계약에 부합된 상태로 아무런 문제없이 양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양수인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⑦ 영업양도 등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⑧ 가맹본부는 영업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영업양수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계약조건에 따라 신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⑨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제16조 제2항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⑩ 가맹본부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승인 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인의 투자비 내역, 영업현황 등의 자료를 양수희망자 또는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 만큼에 해당하는 기간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양수도에 관한 절차와 같음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본부에서승인한 사항에만 준함	가맹점사업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 당사 가맹사업팀 / 사업개발팀 검토(대리행사자 인터뷰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60일 이내) → 대리행사자 가맹점 운영교육 이수->대리행사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본부에서 승인한 사항에만 준함	가맹점사업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업무위탁 신청 → 당사 가맹사업팀 / 사업개발팀 검토(업무 위탁자 인터뷰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60일 이내) → 업무위탁자 가맹점 운영교육 이수->업무위탁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의 가맹계약 기간 중 मामाचिकिन과 경합하는 다른 동종업종에 대한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맹계약 시 가맹본부에게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가맹계약 중 위와 같은 영업행위를 하였을 때

는 중대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영업금지업종	마마치킨과 경합하는 다른 동종업종(치킨을 배달형태 또는 레스토랑 형태의 점포에서 판매하거나, 배달하여판매, 포장판매 형식으로 치킨을 판매하는 업종)
문의	사업개발팀/가맹점 사업팀(02-518-8080)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마마치킨]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 ~ 22:00 (11시간)	주6일 이상, 월26일 이상 (3일 이상 임의로 휴업금지)	문의 : 02-518-8080 가맹본부(가맹사업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각 지역 가맹 사업팀 슈퍼바이저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인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며, 감독이 끝난 후 피드백과 점수를 집계하여 각 가맹점별로 통지합니다. 가맹점 관리표의 체크항목은 운영중에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마마치킨]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개별 행사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함께 통지		행사 계획 공고→ 가맹점의 광고 참여 여부 결정(동의, 약정) → 가맹점 부담액 제시- 행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매체광고 프로모션 시식이벤트 리서치 등
	가맹점 모집광고	가맹본부 100%		-	-
개별 행사	개별 행사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함께 통지			행사 계획 공고→ 가맹점의 광고 참여 여부 결정(동의, 약정) → 가맹점 부담액 제시- 행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할인카드, 제휴서비스	할인율: 고객 구매금액의 15%~100%	할인율의 일정부분을 보전		월 1회 정산	할인율 보전은 제휴업체마다다름

* 전국적인 광고/판촉 행사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비율 이상을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마마치킨 할인카드 정책

종류	업체명	주요 계약 내용	포인트 차감 여부	조건/수수료	비고
통신사	SKT 멤버십	일반:15% VIP:30%	Yes	일반:마마치킨15% VIP:마마치킨 25%,SK5%	1회사용 최대승인금액 20만원
	KT 멤버십	일반:15% VIP:30%	Yes	일반:마마치킨15% VIP:마마치킨21%,KT9%	1회사용 최대승인금액 20만원
	LGU+ 멤버십	일반:15% VIP:30%	Yes	일반:마마치킨15% VIP:마마치킨21%,LGU9%	1회사용 최대승인금액 20만원
신용카드	현대 카드	M 포인트 50%	Yes	마마치킨 25%, 현대카드 25%	최대50%할인으로 포인트 부족 시 포인트 있는 만큼만 사용하여 할인,현대카드 결제 시 사용가능. (1,000P미만은 사용불가)
	삼성 카드	최대 100%	Yes	마마치킨15%, 삼성85%	최대 100% 포인트 차감 할인으로 포인트 부족하면 포인트 있는 만큼만 차감
	국민 카드	최대 100%	Yes	국민카드 100%	최대 100% 포인트 차감 청구 할인으로 포인트 부족하면 포인트 있는 만큼만 차감
	신한 카드	마이신한 포인트 최대100%	Yes	마마치킨 20%, 신한카드 80%	최대 100% 포인트 차감 할인으로 포인트 부족하면 포인트 있는 만큼만 차감 (1,000P 미만은 사용 불가)

- 제휴된 할인내용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공지 하며, 제휴 업체의 추가 및 종료, 카드할인, 행사의 기간 및 내용은 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 판촉등에 사용되는 로고 및 전단은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

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맹계약서 43조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 참조

- | |
|--|
|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레시피 등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매뉴얼,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내용	계약서 조항
⑥ 본조 전항의 요구 품목 또는 의뢰한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을 시에는 공급받았더라면 지불하였을 비용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4조
⑥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합의가 아닌 계약위반·일방적 해지·중단·종료 등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중지된 경우에는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아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 1M2당 × ₩10,000 × 계약기간 잔여월수	제41조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매뉴얼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제기간에 대하여 지체 1일(日)당 금일십만원(₩1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해지, 종료, 중단 등의 사유로 계약이 끝난 경우에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타인과 함께 운영, 해당 매장에 근무 포함)로 가맹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기존의 영업구역 내에서 종료 후 1년간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시에는 금삼천만원(₩30,000,000원)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경업이 종료하는 날까지 일(日)당 금삼십만원(₩300,000원)을 추가로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할 경우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별로 금오천만원(₩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3조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5조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는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0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비고
합계		100일 내외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이전 부담의 금전지급 방법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10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인근10개 가맹점매장리스트) - 가맹희망자 상담 - 가맹계약서 제공	D-9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80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70	
가맹금 예치	- 하나은행	D-70-61(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60(3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60(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50(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40(25일)	
오픈준비	- 아르바이트 교육	D-15(14일)	
점포 개설 (오픈)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매장 임대보증금 제외(자세한 비용은 정보공개서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고)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가맹점 직원교육 수준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영업할 점포를 찾는 것에 따라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와의 분쟁발생 시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 다만,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당사의 구성원 및 담당을 통해 자체협의회를 구성하여 분쟁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주요내용	비 고
본부장(임원) 가맹영업팀장, 사업개발팀장 담당수퍼바이저	분쟁신청신고 및 접수 -> 사실관계조사(15일내외) ->협의회 개최 -> 협의 및 결정사실통보	문의 : 가맹사업팀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

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점포환경개선을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및 운영함에 있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시에 가맹본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협의로 결정이 되며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지원항목,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 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 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 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사업개발팀 영업팀 재경팀 (02-518-8080)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 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 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 사업개발팀 영업팀 재경팀 (02-518-8080)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사항없음(준비 중입니다)

5. 안정적인 점포운업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 해당사항없음.

Ⅷ .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마마치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및 인증 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마마치킨]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부가세포함)	비고
신규 교육	1주 40시간 2주간	1,100천원	최초계약 시 이수 (가맹금에 포함되어 있음)
보수 교육	1주 40시간 2주간		
추가 교육	1일		필요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고 소정의 TEST를 통과 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본사에서 지정한 교육을 이수한 직원 2명 이상을 항시 보유해야 합니다. 단, 초기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퇴사하거나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어 신규 입사자를 교육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기교육(2주)이 아닌 단기 교육(1주)을 이수한 자도 인정 합니다.

다만, 교육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매장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는 표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가맹교육(신규, 추가, 보수)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에 정한 기준 대로 영업정지 절차로 이행되며, 나아가서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마포점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621, 2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일)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84일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515,258	당사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부가세신고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별첨1] 재무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 구입강제품목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구입강제 품목에서 가맹본부가 거래상대방인 경우에는 “차액가맹금”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첨 3] : 구입강제품목 외(外) 원 . 부재료 등 구입권유품목의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자율, 권유 품목에서 가맹본부가 거래상대방인 경우에는 “차액가맹금”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

확인서1: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 공개서를 충분히 설명을 듣고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체크□)

확인서2: 가맹계약서 수령 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가맹계약서를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체크□)

확인서3: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 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창업 예정지 인근 10개 매장의 현황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체크□)

확인서4: 비밀 유지 약속

본인은 귀사의 정보공개서 등을 수령하며,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본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귀사에게 수령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의 자료를 신속하게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제 공 일 자 :	
수 령 장 소 :	
수 령 자 주 소 :	
전 화 번 호 :	010-
수 령 자 :	(서명 또는 인)
가 맹 본 부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 가맹본부란을 제외한 이외의 기재란은 반드시 가맹점주가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